영유아교육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교육]

영유아교육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유치원교육과 관련하여 원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치원의 장이 부담하는 건강관리, 급식 및 식단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의 의무와 만 5세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3~4세아 등에 대해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또한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 체육시설, 이러닝, 교재 및 교구를 이용 · 활용한 각 교육방식별로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강료 환불,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유아교육 1
1. 영유아교육 개관 4
1.1.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4
1.1.1.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4
2. 유치원 교육 6
2.1.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6
2.1.1. 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6
2.1.2. 유치원의 교육내용 10
2.2. 유치원의 관리의무 11
2.2.1. 원아의 건강관리 11
2.2.2. 급식 및 식단관리 15
2.2.3. 위생관리 16
2.2.4. 유치원에서의 안전관리 18
2.2.5. 통학시 안전관리 21
2.3. 유치원 교육비 27
2.3.1.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27
2.3.2. 수업료 등의 반환 30
3.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32
3.1. 학원을 통한 교육 32
3.1.1. 학원의 개념 및 종류 32
3.1.2. 학원의 관리의무 33
3.1.3. 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 36
3.2.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39
3.2.1.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및 종류 39
3.2.2. 학습비의 반환 40
4. 체육시설의 이용 42
4.1. 체육시설의 이용 42
4.1.1. 체육시설의 개념 및 종류 42
4.1.2.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42
4.1.3. 수강료의 반환 46
5. 이러닝의 활용 49
5.1.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49
5.1.1.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49
5.2.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52
5.2.1. 계약의 해지 등 52
5.2.2. 이용료의 환급 54
6. 교재 및 교구의 활용 57
6.1. 학습지 계약 57
6.1.1. 학습지 계약 시 주의사항 57
6.1.2.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60
6.2. 영유아용 도서구입 63
6.2.1. 도서구입 시 주의사항 63
6.2.2. 구입계약의 철회 67
6.3. 완구 및 학용품 선택 75
6.3.1. 완구 및 학용품선택 시 주의사항 75

1. 영유아교육 개관

1.1.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1.1.1. 영유아교육의 개념과 방법

영유아교육의 개념

영유아교육의 개념

▪ ´영유아교육´이란 3~5세의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과정」(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30. 발령 2024. 3. 1. 시행) 교육목적 참조].

※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영유아교육의 방법

유치원 교육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 어린이집
>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학교인 유치원과는 구별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 어린이집 관련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영유아 보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학원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 놀이학교 및 영어유치원
>
> 놀이학교 및 영어유치원은 그 명칭이 학교나 유치원이긴 하지만 사인(私人)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등을 교습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므로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영유아 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교육방법의 예에 해당합니다.

체육시설의 이용

▪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체육시설에서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체육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3조).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유아 교육방법의 예에 해당합니다.

이러닝의 활용

▪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이러닝(Electronic learning, e-Learning)´은 법령에 따라 ´전자학습´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둘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용어를 ´이러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교재·교구의 활용

▪ 영유아 교육교재·교구의 예로는 학습지, 유아용 도서, 학습용 완구 및 학용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유치원 교육

2.1. 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

2.1.1. 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의 개념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유치원의 종류

▪ 유치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

1.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가능)
3.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

- 특수학교의 개념

· ´특수학교´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15조제1항).

·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 특수학교의 유치원 교육과정

· 특수학교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유치원 교육-유치원의 개념 및 교육내용-유치원의 교육내용>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의 학급 설치 기준

·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는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제1호).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제공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 마련

√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고, 그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해당 학교의 각종 정보를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

·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유치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 전단).

※ 장애 영유아의 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교육』 콘텐츠 중 <영유아 장애인 교육>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설립·운영

유치원의 설립

▪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9조).

▪ 교육감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외에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9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

※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32조제2항).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제2항제1호).

유치원의 교직원

▪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유치원의 학급마다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두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2조, 별표 1, 별표 2 및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

유치원의 교원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원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②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원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사	정교사(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정교사(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대학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준교사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보건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영양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및 교육부, 「2026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0쪽 참조).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

Q.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요?

A.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등에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 역시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법령·해석정보–법령해석사례 참조)

2.1.2. 유치원의 교육내용

유치원의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

▪ 국가교육위원회는 유치원의 교육목적과 목표달성을 위해 유치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및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7. 24. 발령, 2020. 3. 1. 시행)].

※ 유치원 교육과정은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중심·놀이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유치원 교육과정」 제2장 참조).

3~5세 누리과정의 교육영역 및 영역별 목표

교육영역	영역별 교육목표
신체운동·건강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기, ② 건강한 생활습관 기르기, ③ 안전한 생활 습관 기르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의사소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기기, ②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기, ③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기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사회관계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②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 ③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예술경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②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기, ③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하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자연탐구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①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기, ②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③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기의 세 가지 교육목표를 갖습니다.
※ 각 연령에 따른 영역별 세부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 제2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유치원의 관리의무

2.2.1. 원아의 건강관리

건강검사의 실시 및 결과 관리

건강검사의 실시

▪ 유치원의 장은 원아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

▹ 유치원의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 및 제12조).

√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검사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1항).

√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해야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제1항).

√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제1항 전단).

√ 건강검진은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실시합니다(「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1항).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진의 실시

유치원 원장의 건강검진 실시의무

▪ 유치원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17조제1항·제4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1항).

▪ 건강검진은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및 비용 등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릅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2항 및 제3항).

> ※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검진기관 찾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및 조치

▪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되,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

▪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 치료·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5항).

건강검진 실시의무 위반 시 제재

▪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유아교육법」 제35조제2항).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념 및 시기

▪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제5호).

▪ 영유아 건강검진은 다음에 정한 시기에 실시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제2항).

- 영유아 건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생후 4~6개월
3차 검진	생후 9~12개월
4차 검진	생후 18~24개월
5차 검진	생후 30~36개월
6차 검진	생후 42~48개월
7차 검진	생후 54~60개월
8차 검진	생후 66~71개월

▹ 영유아 구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30~41개월
3차 검진	생후 42~53개월
4차 검진	생후 54~65개월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고,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검진 담당 의사가 상근하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를 말합니다(「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3).

▹ 인력 기준: 의사, 간호사(의원인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로 갈음) 각 1인 이상

▹ 시설 및 장비 기준: 진찰실, 검진대기실, 신장계 및 체중계, 영아용 신장계 및 체중계,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발달선별검사 도구

영유아 건강검진의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1항).

▪ 건강검진 대상자의 보호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3항).

- 건강검진 대상자의 보호자는 검진 실시에 앞서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등을 작성해 제출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6항, 별지 제4호부터 제4호의8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4까지의 서식).

> ※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의 통보 등

▪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며,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2항, 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

▪ 위에 따라 검진기관이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를 편집하여 인쇄하고, 나이와 성별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3항).

▪ 검진기관은 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영유아에 대해서는 상담 또는 전문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보건실의 설치의무

보건실의 설치

▪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3조).

보건실의 설치기준

▪ 보건실의 위치는 원아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장소여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보건실의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원아의 수 등을 고려하여 원아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보건실에는 다음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원아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 ※ 위급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 · 원장(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포함)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러한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유아교육법」 제17조의3 및 제35조제2항 본문).

보건교육

보건교육의 실시

▪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 유치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2.2.2. 급식 및 식단관리

급식관리

유치원의 급식

▪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17조제3항).

급식시설기준

▪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급식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유아교육법」 제17조제4항,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급식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조리실	·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리실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세척(洗滌)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설비·기구	·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보관실	· 식품보관실은 환기와 방습(防濕)이 잘 되어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기에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유치원의 조리실, 급식설비, 식품보관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이 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 관할청은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1. 해당 유치원의 위치

2.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제3항제3호).

영양사의 고용

▪ 국립·공립유치원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자격을 갖춘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 다만, 위에 따른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식단관리

식단 작성의 원칙

▪ 유치원에서의 급식은 유아기에 필요한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식단을 계획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 교육부, 33쪽).

▹ 유아는 소화기 발달이 미숙하므로 소화하기 쉬운 조리 방법을 선택하고 자극적인 식품 사용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 가공식품이나 간편식보다는 자연식품과 제철 식품을 이용하여 우수한 영양소를 공급하도록 합니다.

▹ 유아의 기호도를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하되 다양한 식품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여러 식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과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급식과 간식으로 나누어서 제공하도록 합니다.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 영양사는 1회 공급 영양소량, 식품군별 1일 제공 횟수, 음식의 종류를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합니다(『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 교육부, 36쪽).

> ※ 유치원의 급식 및 식단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 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dietary4u.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위생관리

유치원의 위생관리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 유치원의 원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유치원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 유치원 안에서의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과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4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 식기·식품 및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상태의 점검

▪ 유치원의 원장은 유치원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항 및 별표 6).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2회 이상.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특별점검	감염병 등으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경우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그 밖에 유치원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치원의 원장은 연 2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점검 결과가 위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제4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소독의 실시

▪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에 한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기간	소독실시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2.2.4. 유치원에서의 안전관리

안전관리

유치원의 안전관리

▪ 유치원의 안전관리 의무

▹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원아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2조).

▹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치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치원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유치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유치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 유치원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안전점검을 실시한 유치원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1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유치원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함)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함)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유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 유치원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 유치원장은 위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1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유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 안전사고의 개념

▹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유치원급식 등 유치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유치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의무

▹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1조, 제42조 및 제57조).

▹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제57조).

※ 공제급여의 신청 및 보상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대처방법

(질문) 아이가 유치원 활동시간에 반 친구와 놀다가 싸우는 바람에 이가 부러져서 왔어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유치원에 아이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다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원아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교육의 실시

▪ 유치원의 원장은 다음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원아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별표 6).

교육종류	교육실시 주기(총시간)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 날씨와 보행안전 6. 어른과 손잡고 걷기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재난대비 안전 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성폭력 예방 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5.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1.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2.2.5. 통학시 안전관리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어린이통학버스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 이라 함)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함)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전단).

√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후단).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황색이어야 하고,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후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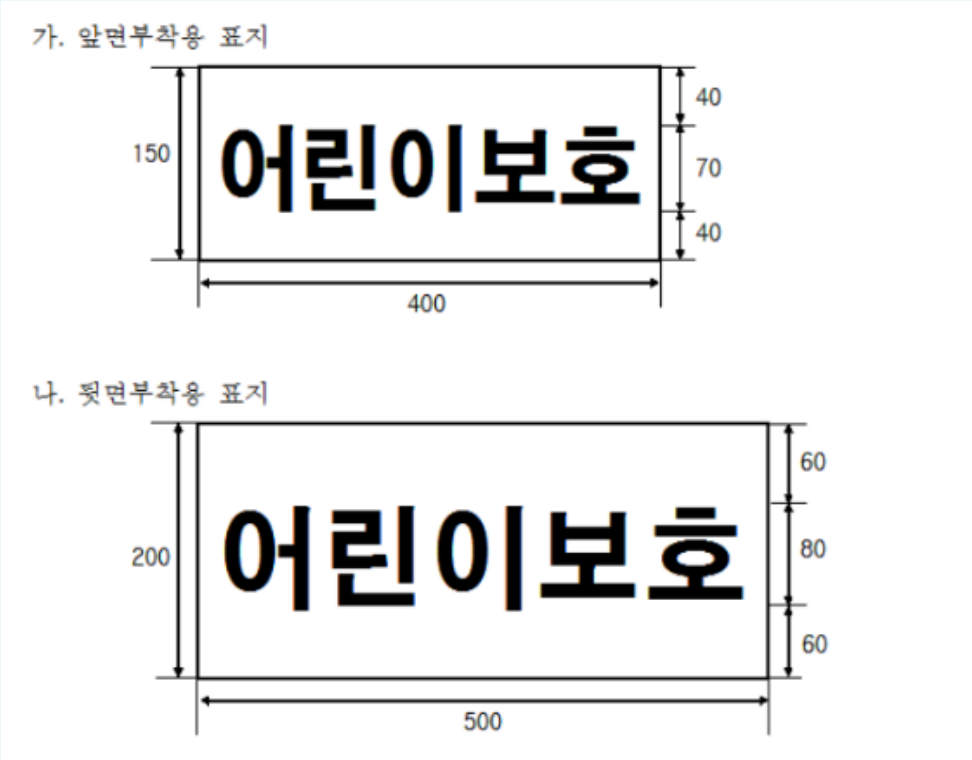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자동차 등록원부에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 어린이 보호표지

어린이통학버스의 앞과 뒤에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9항 및 별표 5의3제1호).



※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함.
2.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함.
3. 글씨는 고딕체로 하고, 그 높이가 앞면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70밀리미터 이상, 뒷면 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8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간격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함.

※ 정지표시장치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정지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좌측 옆면 뒷부분에는 추가로 1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 및 별표 5의3제2호).



<표시부 규격>

※ 주)

1. 바탕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으로 함.
2. 각 모서리의 곡률은 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함.
3.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함.
4.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표시부 규격의 125퍼센트 또는 150퍼센트로 함.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탄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통학버스에서 내려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위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함)를 작동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3항).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4).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 보상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 ※ 공제급여의 신청 및 보상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효과

▪ 신호기·안전표지의 설치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의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133호, 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1호).

▪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 시장 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의 보호구역 도로표지
5. 도로반사경
6. 방호울타리

7.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 차마(車馬)의 통행제한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의 원장이나 장소의 관리자가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원아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 제한이나 통행 금지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1호).

2.3. 유치원 교육비

2.3.1.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유치원 원비의 산정

유치원 원비의 산정

▪ 유치원의 장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전단).

▪ 유치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후단).

1. 방과후 과정 등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무상교육의 실시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 ※ 유치원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유아교육위탁기관이 아닌 미술학원을 말함)과 같은 사설학원이나 유아체능단과 같은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에 지정된 경우, 해당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3~5세에게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이 적용되므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 추진계획('23.1.30., 교육부·복지부)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 지원내용(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참조)

√ 유아학비 및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등 지원

('26.3.1.부터 적용)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5세	2020.1.1.2020.12.31.	100,000	280,000	280,000
	4세	2021.1.1.2021.12.31.			
	3세	2022.1.1.2023.2.28.			
방과후 과정비 (유치원) 누리운영비 (어린이집)	35세	2020.1.1.2023.2.28.	50,000	70,000	70,000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금	35세	2020.1.1.2023.2.28.	50,000	50,000	50,000

※ 2026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 미숙아인 경우, 생후 연령에서 조기출생기간을 제외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및 재원 가능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6.3.1.부터 적용)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200,000 (교육과정비)	•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신청 및 지급(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참조)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1.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2.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 ※ 그 밖의 유아학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수업료 등의 반환

수업료 등의 반환

수업료 등의 반환

▪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환기준

▪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1.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

수업료 등의 반환 관련 분쟁조정기관

유치원 감독기관

▪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한국소비자원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3.1. 학원을 통한 교육

3.1.1. 학원의 개념 및 종류

학원의 개념 및 종류

학원의 개념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다만, 다음의 시설은 학원에서 제외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학원의 종류

▪ 학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함)
-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영어유치원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식,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놀이학교의 경우 그 명칭은 유치원이나 학교지만,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참조).

3.1.2. 학원의 관리의무

학원의 시설관리 의무

교육환경 정화의무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유해업소의 범위>

·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의 종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은 제외)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함)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소는 제외)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른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

28.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설

29.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기준 준수의무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시설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해 학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도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 그 밖의 시설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콘텐츠의 <학원의 설립·운영-학원의 설립준비-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의 안전관리 의무

보험가입의무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시설의 유지·관리의무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학원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2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4).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 학원의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통학차량 관리의무

▪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관리

▹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제1항).

▹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학원의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학원의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 만약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받게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1호, 제2항제7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어린이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유치원 교육-유치원의 관리의무-통학시 안전관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3. 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

교습비 등의 산정

교습비 등의 산정기준

▪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학원에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함)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함)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교습비 등이 결정되면 학습자 및 학습자의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교습비 등의 조정

▪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 ※ 지역별 학원 수강료는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습비 등의 반환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 학원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제10호 ②학원운영업).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의 체결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에 의한 교습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 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그 밖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의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 환급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계약한 수강 개월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하지 않음
계약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조정기관

▪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

▹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원 소재지의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는 교습비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3.2.1.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및 종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및 종류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 평생학습관

-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
- 평생학습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5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는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및 산업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이 있습니다.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에는 서울YMCA,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습니다.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는 KBS방송문화센터, 한겨레교육문화센터, 문화일보부설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 ※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위치, 연락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2.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학습비의 반환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1.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학습비의 반환사유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합니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5.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4. 체육시설의 이용

4.1. 체육시설의 이용

4.1.1. 체육시설의 개념 및 종류

체육시설의 개념 및 종류

체육시설의 개념

-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등록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 신고 체육시설: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 인공암벽장

4.1.2. 체육시설의 준수의무

시설기준

시설기준 준수의무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체육시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을 준수할 것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출 것.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출 것(이 경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임의시설	편의시설	√ 관람석 설치 가능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 가능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 가능(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 설치 가능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준수할 것

▪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수영장의 경우에는 위 공통 시설기준 외에 다음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구분	시설기준
운동시설	√ 물의 깊이: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 √ 수심의 표시 등: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어린이용·경기용 제외) √ 미끄럼방지 자재 사용: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에 사용 √ 도약대 설치 시 수영조의 수심: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함 √ 도약대 설치 시 천장까지의 간격 ※ 스프링보드 도약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 5미터 이상 ※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 3.4미터 이상 √ 정화설비: 순환여과방식 √ 배관설비: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에서 물이 계속 순환되도록 설치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 1.2미터 이상(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 1.2미터 미만가능) √ 수영조 주변 통로의 설계: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설계
안전시설	√ 감시탑(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것) √ 수영조 내 사다리(벽과 사다리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
편의시설 (임의시설)	√ 물 미끄럼대 √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

※ 체육시설업자가 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 수영장 외의 다른 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또는 이 사이트의 『체육시설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위생기준

안전·위생기준 준수의무

▪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 수질 관리
- 보호 장구의 구비

- 이용자의 이용질서 유지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의 관리
- 실외 체육시설에서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 제한
-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
- 이용인원의 준수

▪ 체육시설이용자는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체육시설업자가 위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2호).

보험가입

보험가입의무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체육시설업자가 위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체육도장업
- 골프연습장업
- 체력단련장업
- 당구장업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체육교습업

회원의 권익 보호

회원의 권익 보호의무

▪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약관에 명시된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한 양도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자격의 양수인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2. 입회금액의 반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호)

√ ‘입회금액’이란 체육시설의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사람이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모집자에게 내는 모든 금액(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기부금 제외)을 말합니다.

√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해서는 회원모집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3. 연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호)

√ ‘연회원’이란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을 말합니다.

√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4. 회원증의 확인·발급(「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호)

√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해 회원에게 확인·발급해야 합니다.

√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에게도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해 회원에게 확인·발급해야 합니다.

5. 회원 대표기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

√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위와 같은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4.1.3. 수강료의 반환

수강료의 반환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제10호

④체육시설업).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위약금}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위약금} 환급

▪ 수강료 환급에 따른 사은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제10호 ④체육시설업).

사은품 반환원인		사은품 반환기준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포장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 상태로 반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해제하는 경우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 없음

수강료 관련 분쟁조정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권을 가지므로,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는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제6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이러닝의 활용

5.1.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5.1.1.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이러닝의 개념

이러닝의 개념

▪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이러닝(Electronic learning, e-Learning)´은 법령에 따라 ´전자학습´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둘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용어를 ´이러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닝콘텐츠의 개념

▪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이러닝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의 예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울외국어교육포털 등이 있습니다.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자에 관한 사항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자가 영업개시 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통신판매업자가 위 신원정보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계약조건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이러닝 프로그램의 명칭·종류 및 내용

- 이러닝 프로그램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음)
-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 방법 및 시기
-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포함)
- 이러닝 프로그램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 이러닝 프로그램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함)
-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거래조건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호).

※ 통신판매업자가 거래조건에 관해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관해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4호).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정기결제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이러닝 프로그램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이러닝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되기 전 30일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 이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5호의2).

거래기록 열람·보존·방법제공 여부의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 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함)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 통신판매업자가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1호).

약관의 확인

▪ "약관"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약관에는 계약기간, 해지,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며, 이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 이러닝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철회,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연결화면이나 팝업화면으로 제공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확인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러닝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이러닝 프로그램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이러닝 프로그램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이러닝 프로그램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기간통신사업자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마. 전자결제업자 등

바.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에 의해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 미성년자와의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러닝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이러닝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위의 1.부터 5.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5.2. 학습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 환급

5.2.1. 계약의 해지 등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청약철회 기간 및 효력발생 시기

▪ 이러닝학습자는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1항].

▪ 이러닝학습자의 청약철회는 이러닝학습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2항 전단].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닝학습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러닝학습자에게 회신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2항 후단].

청약철회의 효과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닝학습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이러닝학습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3항].

▪ 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이러닝학습자가 이를 부담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4항].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러닝학습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5항].

이러닝 중도 해지·해제

중도해제

▪ 이러닝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러닝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1항].

- 이러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이러닝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러닝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이러닝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닝학습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러닝 중도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전액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2항].

중도해지

▪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2항].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온라인학습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3항].

청약철회 및 해지·해제 관련 분쟁조정기관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제65조).

>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기준

이용금액 산정

▪ 이러닝학습자의 일부 이용금액을 공제하기 위한 이용금액 산정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

-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1일 이용대금 X 기 이용일수
- 학습회차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및 개별 구매 콘텐츠의 경우: [분당 이용대금 X 이용시간(분)].

  ※ 이러닝 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1파일 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 그 밖의 요금제: 요금제 별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산정

환급수단 및 지연이자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이러닝학습자에게 이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닝학습자가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1항 전단].

※ 만약,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할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1항 후단].

▪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이러닝학습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2항].

5.2.2. 이용료의 환급

이러닝 이용료 환급

환급기준

▪ 이러닝 이용료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인터넷콘텐츠업(3-1) 참조].

이용료 환급원인		이용료 환급기준	비 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계약취소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운영업 적용) - 기납부금 환급,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 금지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되며, 콘텐츠의 훼손에 대한 책임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콘텐츠가 공급된 사실 및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할 것 - 중요사항이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7조를 말함 -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내에 해지를 요구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문자 등으로 고지함
거짓,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계약 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10%의 금액을 더하여 환급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유료청구 금액 환급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 금액 환급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의 중지·장애	3일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 상태가 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 해지 및 남은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 서비스의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 서비스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 과실로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사전고지란 서비스의 중지·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한 것을 의미
	4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지·장애로 인한 피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사전고지한 상태에서 서비스의 중지·장애	서비스의 중지·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 무료로 연장	
실제 이용 시간보다 초과하여 이용요금 청구한 경우		초과분 환급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할 것

사은품의 반환

▪ 이용료 환급 시 사은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인터넷콘텐츠업(3-3) 참조].

사은품 반환원인		사은품 반환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포장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 상태로 반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해제하는 경우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 없음

이용료 환급 관련 분쟁조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교육감

▪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해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교육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3조제1항, 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제65조).

>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교재 및 교구의 활용

6.1. 학습지 계약

6.1.1. 학습지 계약 시 주의사항

학습지 계약의 법적성격

계속거래

▪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학습지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됩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III. 1. 마).

학습지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 학습지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금액,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학습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9조).

- 학습지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학습지 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학습지의 명칭, 종류 및 내용
- 학습지 대금(가입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학습지 거래와 관련해 지급하는 금액 포함)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 학습지의 거래 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 소비자 피해보상·학습지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그 밖에 거래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

※ 위의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한, 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 약관의 작성의무

- 학습지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학습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소비자에게 주어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주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1호).

▪ 약관의 설명의무

▹ 학습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소비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2호).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의 위반 시 효과

▹ 학습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소비자의 거래기록 열람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 학습지 사업자는 소비자가 학습지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으로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지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학습지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1호 및 제66조제3항제7호).

학습지 사업자의 금지행위

▪ 학습지 사업자는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1. 학습지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위협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3. 학습지 계약에 필요한 학습지를 통상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4. 소비자가 학습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2호).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학습지를 공급하고 학습지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8. 소비자가 학습지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학습지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3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의무

▪ 학습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학습지가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학습지와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학습지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것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학습지 사업자에 대한 권장사항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가입권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

1.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로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학습지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학습지의 구매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학습지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으로 할 것

4. 소비자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학습지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말 것

8.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건을 쉽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9.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회사 또는 은행과 체결할 것

6.1.2.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소비자의 계약 해지·해제권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학습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능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544조·제546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및 제52조).

해지·해제권 행사의 제한

▪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학습지와 같이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학습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학습지 계약 해지·해제의 효과

학습지 계약 해지·해제 후 학습지 사업자의 의무

▪ 위약금 과다청구 등의 금지의무

▸ 학습지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학습지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청약이 철회된 경우는 제외함)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학습지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의무

▸ 학습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학습지나 사은품을 학습지 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한 경우 학습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한 경우 학습지 사업자는 반환받은 학습지나 사은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감액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 반환받은 학습지나 사은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학습지나 사은품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

√ 학습지 사업자는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내에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전단).

√ 학습지 사업자가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후단).

√ 학습지 사업자는 학습지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전단).

▹ 학습지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학습지나 사은품의 대금(학습지나 사은품이 반환된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 포함)이 이미 공급한 학습지나 사은품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전단).

√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후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했음에도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 학습지 사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1항제1호).

√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학습지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했음에도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 후 환급해야 할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학습지 사업자가 위의 학습지 계약 해지·해제 후 학습지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환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8호).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후 환불기준

환불기준

▪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상품(재화), 제4호 ③ 도서·음반 (2-1) 참조).

환불 원인	환불 기준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교 환
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 해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이미 받은 상품의 동시반환)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계약 해제
판매원의 신분과 판매처가 거짓인 경우	계약 해제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한 경우	계약 해제
사업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구독료의 1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소비자의 책임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 제공받은 사은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
소비자의 책임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 제공받은 사은품이 훼손된 경우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학습지 구독계약의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반환의무 면제
청약철회기간 후에 계약 해제 시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 해제

※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계약의 해지·해제 및 환불관련 분쟁조정기관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제6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2. 영유아용 도서구입

6.2.1. 도서구입 시 주의사항

할부로 구입 시 주의사항

할부계약내용의 확인

▪ 도서판매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본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1. 도서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도서의 인도 등을 받은 경우 도서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
3. 할부가격(소비자가 도서판매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 합계액)[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생략가능]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소비자가 도서판매자에게 도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도서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도서를 인도 받기로 하는 계약에 한함)[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생략가능]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도서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생략가능]
7. 소비자가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의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생략가능]

   ※ 도서판매자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1호).

서면 계약서의 작성

▪ 도서의 할부계약은 다음의 할부계약 요건을 적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1. 도서판매자, 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서의 종류·내용 및 도서 인도 등의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시기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소수점 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
7. 계약금

8. 도서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소비자의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10. 도서판매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1. 소비자가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의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비율

12.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3. 소비자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기한이익의 상실>

※ 소비자는 다음의 경우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로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

<소비자의 항변권>

※ 소비자는 다음의 경우 도서판매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서 인도 등의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인도되거나 제공되지 않는 경우

4. 도서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할부 계약서의 서면 작성 시 다음의 작성방법을 따라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계약서의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소비자의 철회권 관련 사항, 할부계약의 해제관련 사항,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비율, 기한이익 상실 관련 사항은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색의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해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3. 소비자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시킬 것

▪ 도서판매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본문).

※ 도서판매자가 할부계약 요건을 모두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2호).

▪ 할부계약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도서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인터넷으로 구입 시 주의사항

사이버몰의 안전성 확인

▪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전자대금 결제의 안전성 확인

▪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자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 등”이라 함)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1. 「은행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 신용카드업자
3.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한 가치를 기록·저장했다가 재화 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6.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1. 재화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의 가격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해야 하며(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또한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자대금 결제 도중 문제 발생 시 사업자의 협력 확인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해 다툼이 있어 전자결제업자 등에게 사업자나 소비자가 분쟁발생 사실의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결제업자 등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고객인증 관련 정보 포함)의 열람·복사 허용

▹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전자결제업자 등의 보안유지조치 관련 정보의 열람·복사 허용. 다만,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배송 도중 문제 발생 시 사이버몰의 협조사항 확인

▪ 배송 과정에서 사고·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을 하는 사업자에게 분쟁 발생사실의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배송사업자는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 배송관련 기록의 열람·제공
2. 사고 또는 장애관련 사실의 확인을 위한 기록 열람

방문판매로 구입 시 주의사항

방문판매 계약내용의 확인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는 도서 판매 계약의 체결 전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기재요건을 설명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다만,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외)
3. 도서의 명칭·종류 및 내용
4. 도서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도서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도서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도서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도서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도서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방문판매 계약내용 고지의 효과

▪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서면 계약서의 교부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는 도서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기재요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전단).

▹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송부한 계약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후단).

※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계약서 발급 시 거짓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및 제66조제3항제3호).

6.2.2. 구입계약의 철회

할부계약 시의 청약철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 소비자는 다음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나. 도서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도서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도서를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도서판매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

▪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려면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도서판매자에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도서판매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도서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도서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판매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청약철회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 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도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2.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복제할 수 있는 도서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이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도서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 분쟁 발생 시의 입증책임

▹ 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 도서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 청약의 철회권 행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서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하며, 도서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 소비자의 청약 철회 시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도서판매자가 부담하며, 도서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인터넷을 통한 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 통신판매업자와 도서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 다음과 같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나. 도서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도서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도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도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도서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음)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도서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도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 그 사실을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할 것

√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

√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4. 위1.부터 3.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 분쟁 발생 시의 입증책임

▹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도서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도서 구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도서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 도서의 반환

▹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 소비자가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를 한 경우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지만, 그 밖의 사유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및 제10항).

▪ 도서대금의 환급

▹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도서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도서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전단).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는 도서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도서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바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함)에게 도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본문).

※ ‘그 밖의 결제수단’이란 도서를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한 현금(계좌이체 포함)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도서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는 바로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도서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 도서대금의 환급 지연 시 지연이자의 지급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도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15를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후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통신판매업자 중 결제업자에 대한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 소비자의 결제업자에 대한 상계 요청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도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도서를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소비자가 도서를 계약서에 적힌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로 반환했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 결제업자에 대한 결제 거부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상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전단).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후단).

▪ 연대책임

통신판매업자, 도서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도서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1항).

▪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통신판매업자는 도서가 사용된 경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도서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도서의 경우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 판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공급받은 도서가 반환된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도서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도서의 판매가액에서 도서가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공급받은 도서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그 도서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방문판매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

√ 다음과 같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나.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철회권 행사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도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함)의 의사에 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도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도서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도서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방문판매자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도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도서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 그 사실을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할 것

√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

▪ 분쟁 발생 시의 입증책임

▹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도서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도서 구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도서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 도서의 반환

▹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 도서대금의 환급

▹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도서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포함)은 도서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도서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전단).

▹ 방문판매자등은 도서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도서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바로 결제업자에게 도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본문).

※ 그 밖의 결제수단이란 도서를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한 현금(계좌이체 포함)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결제업자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도서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는 바로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단서).

▹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도서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도서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1호).

▪ 소비자의 결제업자에 대한 상계요청

▹ 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도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후단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1.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2.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3. 도서를 반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소비자가 도서를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로 반환했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

▪ 도서대금의 환급 지연 시 지연이자의 지급

▹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도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15를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후단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방문판매자등 중 결제업자에 대한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결제업자에 대한 결제 거부

▹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상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전단).

▹ 방문판매자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후단).

▪ 연대책임

▹ 방문판매자등, 도서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도서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항).

▪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방문판매자등은 도서가 사용된 경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1. 도서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도서의 경우: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 판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1. 공급받은 도서가 반환된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도서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도서의 판매가액에서 도서가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공급받은 도서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그 도서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청약철회관련 분쟁조정기관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는 도서구입계약의 청약철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제65조)

※ 도서관련 분쟁해결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상품(재화), 제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3. 완구 및 학용품 선택

6.3.1. 완구 및 학용품선택 시 주의사항

완구의 선택 시 주의사항

완구의 개념

▪ ´완구´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의 선택 시 주의사항

▪ 연령구분 및 경고 표시 확인

▹ 완구에 사용자의 최소 연령이 단위 포장에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 “경고! 8 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음. 성인의 통제를 요함. 부풀리지 않은 풍선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함.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함.”

√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음. 3 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 “경고! 36 개월을 초과하는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 적합성 확인

▹ 영유아에게 적합한 완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 인형: 손으로 쥐거나 껴안을 수 있고, 속을 솜이나 알갱이로 채운 부드러운 인형, 헝겊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의 인형(액세서리 포함),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킨 단순한 형태의 가벼운 플라스틱 인형 등이 적합합니다.

√ 완구 자동차: 지나치게 세부적인 형태 또는 특정 제조사나 자동차 모형을 나타내지 않으며 원색으로 장식된 간단하고 두툼한 형태의 자동차, 트럭, 배 및 기차 등이 적합하며, 완구의 동작은 굴리고, 실은 것을 버리고, 밀고, 놓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 유아 완구: 유아가 아기 침대 또는 놀이판에서 작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고, 흔들거나 움켜잡기 쉽고, 딸각딸각 소리가 나거나 껴안기 쉽게 만든 완구가 적합합니다.

√ 조기 학습 완구: 문자, 숫자 또는 형상을 익히도록 하는 책이나 퍼즐, 그리고 바퀴를 돌리거나 손잡이를 당기거나 놓는 것 또는 크기분류를 익히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물리적 동작을 익히는 완구가 적합합니다.

√ 부드러운 공과 이와 유사한 완구: 부드럽고 가벼운 공 또는 꽉 쥐거나 흔들거나 굴리거나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완구가 적합합니다.

▪ 안전성 확인

▹ 영유아 특히 3세 이하의 아이들은 물체를 입에 넣으려는 경향이 강해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킨 경우 호흡기에 경색을 일으키거나 호흡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러한 부품이 있는 완구는 피하도록 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의 안전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용품 선택 시 주의사항

안전확인대상 학용품의 개념 및 종류

▪ ´안전확인대상 학용품´이란 학용품 중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초등학생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필통,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점토류, 문구용 풀 및 악기류는 안전확인대상 학용품에 해당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학용품의 선택 시 주의사항

▪ 학용품은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향기 나는 제품의 경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 또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 학용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구 및 학용품 관련 분쟁 해결방법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완구 및 학용품 제조업자는 민사상 제조물책임을 집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및 제3조).

▹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1호).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항).

- 완구 및 학용품 제조업자는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등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방법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
  - 소비자는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문구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피해유형	보상기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 하자 발생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 완구 및 학용품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자소송포털-형사소송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